인천 검단신도시 AB12BL 우미'린 에코뷰 입주자 모집공고

■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www.lynn.co.kr)합니다.
– 본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lynn.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 기간 등 일부 지정일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가 고지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및 계약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관람은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접수 기간에만 관람이 가능하오니 이점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 접수 및 정당 계약 시 견본주택 방문일은 일정을 참고하시어 내방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 032-547-64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다량의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분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3.02.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3.2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8조 제1항에 의거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3.27.)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의거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3.27.)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자에게 공급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한 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2항 및「인천광역시 서구 공고」제2016-1688호에 의거 청약접수 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20%를 가점제로, 나머지는 8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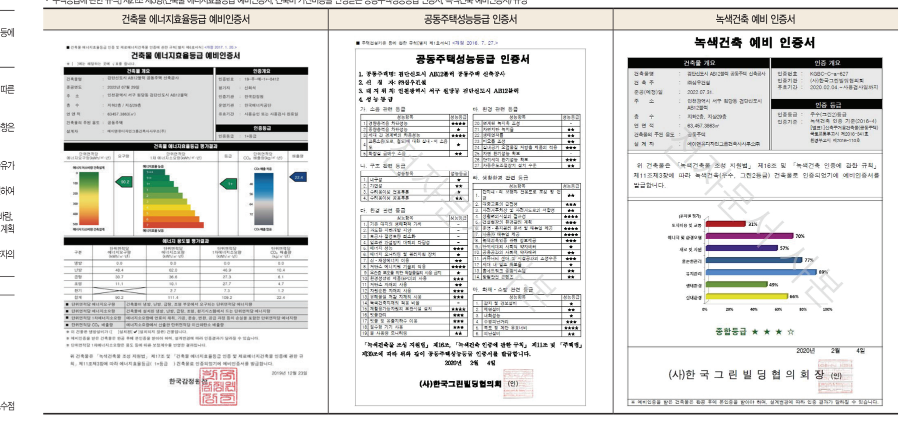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광주-주택2006-0017	광주-주택2000-0004	경기-주택2001-0075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비 고
032-547-64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	www.lynn.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우미린 견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운영기간: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견본주택 일반 관람이 불가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됩니다. 다만 당첨자(예비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접수 및 계약기간 내 한시적으로 관람 가능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검단신도시 우미 Lynn 에코뷰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총 437세대 [59·84㎡]

032) 547-6400

■ 시행 : (주)심우건설 ■ 시공 : (주)우미개발, (주)우미토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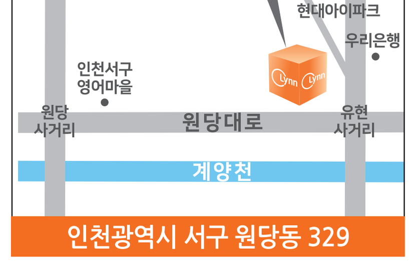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